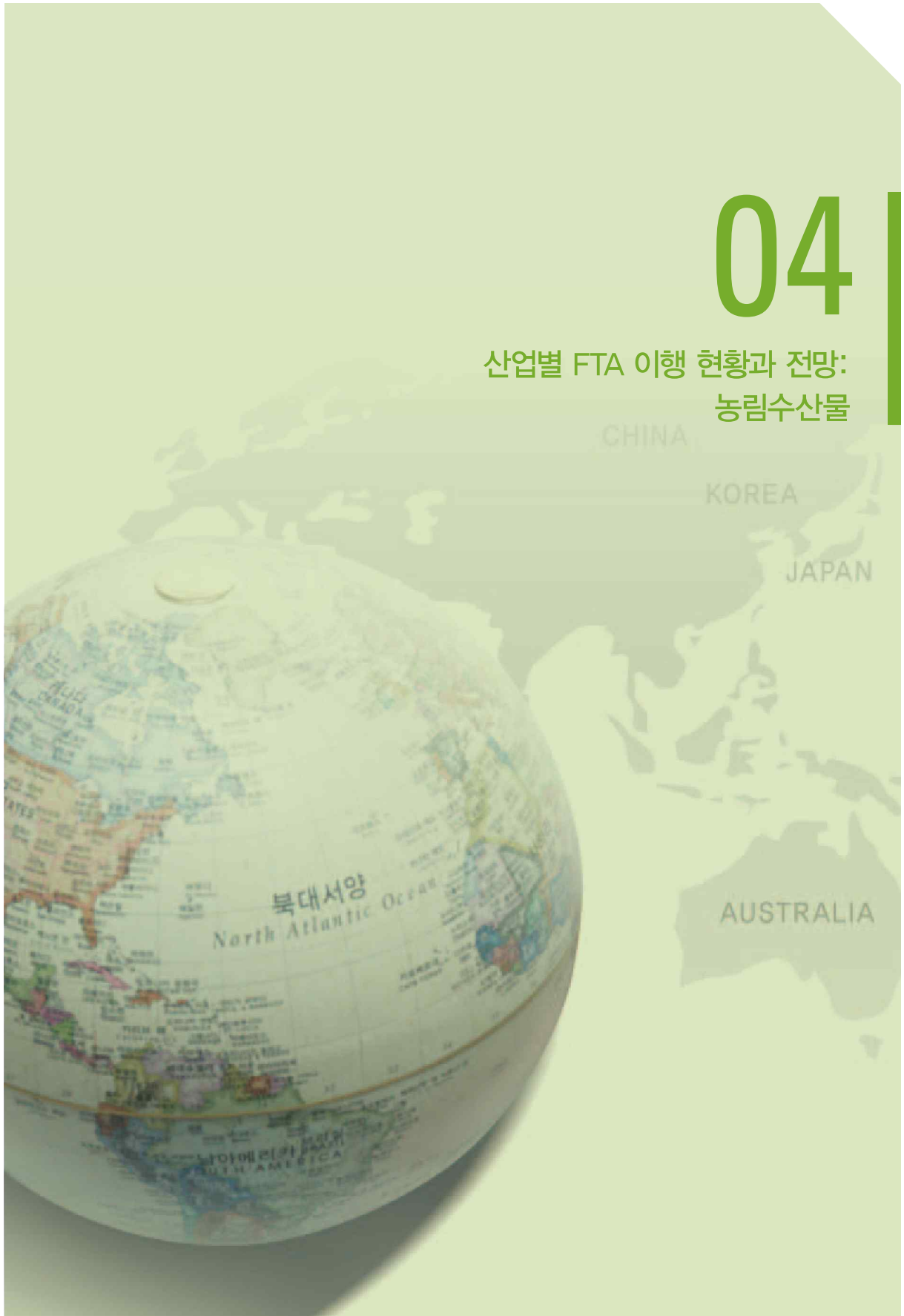


# 04

##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농림수산물



##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 농림수산물



■ 분석 배경 : 우리나라는 한국경제의 세계화로 인해 농림수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FTA협상때마다 농림수산물은 주요 이슈가 되어왔다. 따라서 3장에서는 FTA별로 농림수산물의 교역현황 및 특혜 수출입 동향을 통해 협정별 특징 및 현황을 살펴본다.

■ 분석 범위 : 농림수산물

### I. 농림수산물 교역동향 및 주요품목

#### 1) 농림수산물 교역동향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2012년 對세계 수출은 72억불로 전년대비 4% 증가, 수입은 310억불로, 전년대비 3.5% 감소하였다. FTA 체결 국가와의 수출은 18억불, 수입은 176억불을 기록하였다.

한편 2012년 농림수산물 전체 수출입 가운데, FTA 국가로의 수출은 25%, 수입은 57%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對세계 실적대비 FTA 국가로의 수출비중은 지난 3개년('10~'12년) 평균 27%, 수입은 57%를 차지하고 있다.

| 표 4-1 |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수출입 현황(2010~2012)

단위 : 백만달러

연도	수출			수입		
	對 세계	對 FTA	FTA 점유율 <sup>34)</sup>	對 세계	對 FTA	FTA 점유율
2010	5,570	1,585	28%	24,251	13,719	57%
2011	6,936	1,906	27%	32,126	18,157	57%
2012	7,214	1,833	25%	31,010	17,650	57%

34) 농림수산물 대세계 수출실적 중 FTA 국가로의 수출 실적이 차지하는 비중

## 2) 농림수산물 수출 품목

\* '12년 FTA 상대국 수출액 1억불 이상 품목 :  
참치, 제조담배, 면주, 커피조제품, 모류

\* 기타조개, 기타주류, 정당, 사탕은 FTA  
상대국으로의 수출비중이 저조

2012년 농림수산물 수출상위 품목은 제조담배, 참치, 기타어류, 면류, 커피조제품 등이다. 수출상위 20대 품목 가운데 FTA 체결 국가로의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모류<sup>35)</sup>(76%) > 참치(57%) > 면류(43%) > 커피조제품(41%) > 기타음료(40%) 등으로 조사되었다.

| 표 4-2 | 농림수산물 주요 수출 품목과 FTA 점유율(2012)

단위 : 천달러

순위	품목	對 세계 수출	對 FTA 수출 <sup>36)</sup>	*비중
1	제조담배	614,340	160,735	26%
2	참치	445,450	252,640	57%
3	기타어류	424,478	86,441	20%
4	면류	315,628	136,916	43%
5	커피조제품	297,230	122,196	41%
6	정당	262,874	14,915	6%
7	어육	257,894	51,399	20%
8	기타농산가공품	253,695	40,150	16%
9	기타주류	207,174	8,759	4%
10	기타수산가공품	203,543	62,934	31%
11	로얄제리	185,738	69,231	37%
12	기타해조류	174,765	65,650	38%
13	기타음료	157,947	62,766	40%
14	모류	139,929	105,951	76%
15	인삼류	133,860	29,194	22%
16	소주	126,813	14,820	12%
17	오징어	115,830	43,224	37%
18	기타조개	109,430	2,389	2%
19	비스킷	108,882	29,562	27%
20	사탕	106,280	6,572	6%

\*비중 : 對FTA 수출 / 對세계 수출\*100

35) Animal hair

36) FTA국으로의 수출을 의미함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 농림수산물

3) 농림수산물 수입 품목

- \* 2012년 FTA 상대국 수입 상위품목 :  
사료, 박류, 쇠고기, 천연고무, 돼지고기
- \* 쇠고기, 원당, 기타어류, 옥수수, 면, 원목, 대두  
유는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저조

2012년 농림수산물 수입상위 품목은 사료, 박류, 쇠고기, 천연고무, 돼지고기 등이다. 수입상위 20대 품목 가운데, FTA 체결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천연고무(100%) > 기타식물성 유지(92%) > 돼지고기(86%) > 로얄제리(81%)등으로 조사되었다.

| 표 4-3 | 농림수산물 주요 수입 품목과 FTA 점유율(2012)

단위 : 천달러

순위	품목	對 세계 수입	對 FTA 수입	*비중
1	사료	3,499,303	1,720,894	49%
2	박류	1,598,743	644,663	40%
3	쇠고기	1,410,078	522,518	37%
4	천연고무	1,372,738	1,371,126	100%
5	돼지고기	1,206,562	1,035,914	86%
6	원당	986,433	281,401	29%
7	밀	866,640	441,172	51%
8	기타어류	799,970	275,533	34%
9	기타식물성유지	759,986	702,243	92%
10	대두	746,697	310,477	42%
11	옥수수	724,021	194,184	27%
12	면	688,858	178,770	26%
13	원목	655,476	141,445	22%
14	합판	592,346	393,222	66%
15	로얄제리	497,374	403,349	81%
16	기타수산물가공품	491,141	330,885	67%
17	커피	477,206	213,204	45%
18	제재목	472,967	194,225	41%
19	기타농산물가공품	458,404	244,393	53%
20	대두유	424,650	88,676	21%

\*비중 : 對FTA 수입 / 對세계 수입\*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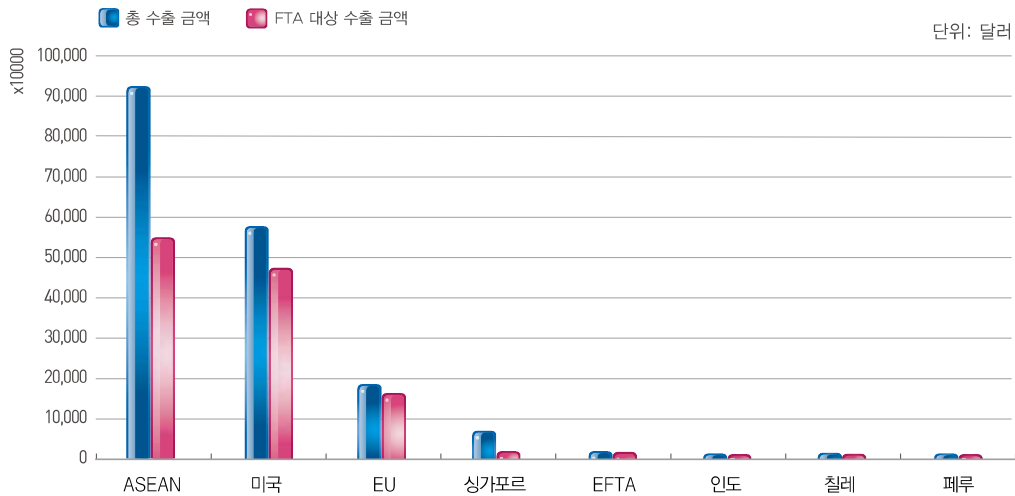
## II. 농림수산물 FTA 특혜 교역 및 특징

### 1) 농림수산물 FTA 특혜 수출

2012년 농림수산물 중 FTA 특혜가 가능한 'FTA 대

상품목<sup>37)</sup>의 수출액은 약 12억불, 그 가운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한 FTA 활용 수출액은 약 3.3억불로 26.4%의 활용비중을 보이고 있다.

| 그림 4-1 | 농림수산물 특혜수출 동향(2012)



#### 미국, EU, EFTA 등 선진경제권으로의 높은 수출 활용

우리나라 농림수산물의 FTA국가로의 수출은 ASEAN, 미국, EU 순이며, 그 외 국가의 비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로 수출되는 품목은 FTA 상대국의 관세철폐 수준이 높아 FTA 대상품목의 비중이 높은 반면,

ASEAN의 경우 관세철폐 수준이 낮아 FTA 대상품목의 비중도 낮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ASEAN은 FTA 대상품목의 수출액이 약 5.5억불로 수출규모가 크지만 FTA 활용 수출액은 약 6백만불에 그쳐 농림수산물의 FTA 수출활용 수준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7) FTA 협정 체결로 상대국의 수입관세가 하락하여 우리나라가 수출시 FTA 특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함.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 농림수산물

對ASEAN 수출 품목 가운데 FTA 대상품목의 수출액 기준 상위 10개는 참치, 커피조제품, 면류, 김, 닭고기, 물, 모류, 기타, 어류, 분유, 오징어 등이며, 이들 가운데 FTA를 활용하는 품목은 면류 1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인도 역시 ASEAN과 마찬가지로 FTA 대상 품목의 활용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미국과 EU는 FTA 대상품목의 수출금액이 각각 약 4.9억불, 1.8억불이며, FTA 활용 수출액도 각각 2.3억불, 0.87억불로 절반 수준의 FTA 활용을 보이고 있다. 對미 수출 품목 가운데 FTA 대상 품목의 수출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은 면류, 해조류, 음료, 제조담배, 배, 기타 농산가공품, 비스킷, 기타 수산가공품,

기타 소스류, 로얄제리 등으로 제조 담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FTA 수출 활용 비중은 43~66%로 조사되었다.

EU는 참치, 면류, 어육, 기타어류, 기타음료, 로얄제리, 기타 수산가공품, 오징어, 느타리버섯, 기타 농산가공품 등으로 이 가운데 어육과 수산가공품이 각각 98%, 77%의 높은 활용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EFTA는 FTA 대상품목의 수출규모는 3,5백만 불로 적은 규모이지만 수출활용 비중이 90%에 육박하여 대부분의 품목이 FTA 특혜를 통해 수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표 4-4 | 농림수산물 협정별 FTA 특혜수출의 주요품목(2012)

협정	주요 품목	특 징
AS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치, 커피조제품, 면류</li> <li>김, 닭고기, 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국가로의 수출규모 큰편으로 나타남</li> <li>FTA 대상 품목의 범위가 협소<sup>38)</sup></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류, 김, 기타음료, 배, 비스킷</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 규모 대비 FTA 활용이 활발</li> </ul>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류, 어류 기타음료,</li> <li>기타 수산가공품, 느타리버섯</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 규모 대비 FTA 활용이 활발</li> <li>참치, 기타어류<sup>39)</sup>, 로얄제리, 오징어, 기타 농산가공품 (FTA 활용기대 효과는 높으나 활용비중 저조)</li> </ul>
E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류, 단백질류, 인삼류</li> <li>기타소스류, 느타리버섯</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품목 대부분이 FTA 활용됨</li> <li>발효된 FTA 중 가장 높은 활용비중 보임</li> </ul>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수산가공품, 종자류, 면류</li> <li>껌, 과일주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품목의 FTA 적용실적 낮음<sup>40)</sup> (기타 수산가공품을 제외)</li> </ul>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류, 기타음료, 기타해조류</li> <li>빵, 인삼류, 커피조제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상위 품목들의 FTA 평균 활용비중이 낮음</li> <li>FTA 활용이 미미함</li> </ul>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곡류가공품, 기타음료, 제조담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활용은 평균수준</li> </ul>

38) 관세철폐 수준이 낮아 실질적으로 FTA 관세혜택이 가능한 FTA 대상품목의 비중이 50%수준  
 39) 03류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경우 한·EU 협정상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에 따라 FTA 활용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40)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절차의 부담, 인도 내 통관지연 등이 FTA 활용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2) 농림수산물 FTA 특혜 수입

2012년 농림수산물 중 FTA 대상품목의 수입액은 약 111억불, FTA 활용 수입액은 약 85억불로 약 76%의 활용비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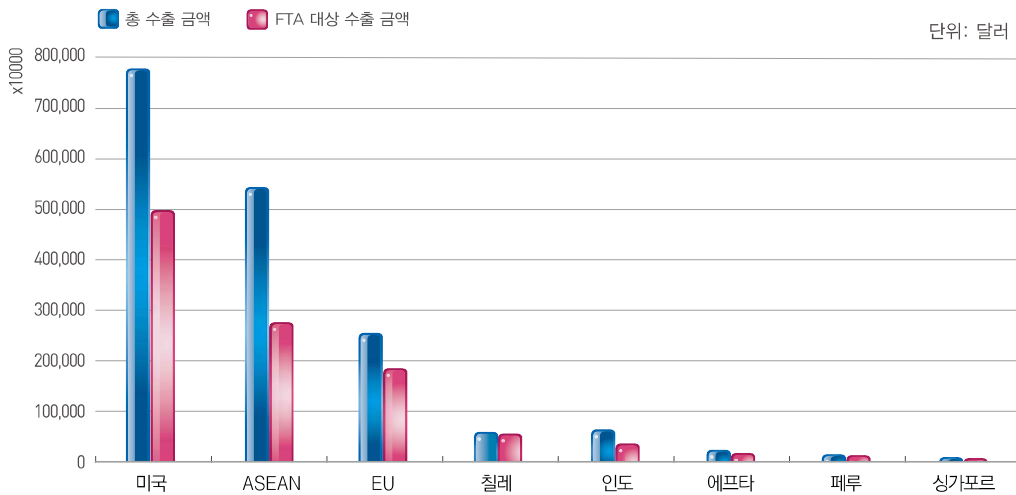
농림수산물의 FTA국가로의 수입액은 수출과 마찬가지로 미국, ASEAN, EU의 규모가 가장 크고 그 외 국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물 수입에 대한 협정별 관세양허 수준이 다르며, 對미국 총수입의 65%, 對EU 총수입의 74%, 對ASEAN 총수입의 53%가 FTA 특혜가 가능한 품목이다.

## 발효시점과 FTA 수입활용의 양의 상관관계

FTA 수입활용과 협정 발효 시점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발효시점이 오래된 FTA일수록 높은 활용비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FTA 무역환경이 시장 내 안정화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농림수산물의 협정별 특혜수입 활용비율은 평균 7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다만 인도의 활용비율만 타 협상체결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칠레는 FTA 대상품목의 수입액이 5.2억불, FTA 적용 수입금액이 5억불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하여 특혜 수입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對칠레 수입 품목

| 그림 4-2 | 2012년 협정별 농림수산물 수입현황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 농림수산물

가운데,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 상위 10대 품목은 포도, 돼지고기, 제재목, 기타어류, 기타 수산가공품, 포도주, 과일주스, 오징어, 기타 과실, 호도 등이다.

칠레와 마찬가지로 EFTA도 높은 수입활용비율을 보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기타어류, 커피, 어육, 식물성액즙, 초콜릿, 치즈, 기타 농수산물가공품 등이다.

이 가운데, 치즈와 제조담배는 FTA 활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치즈의 경우 엄격한 양허 수준이 FTA 활용 저조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외 EU,

미국 등도 주요 품목에 대해 활발한 FTA 특혜 수입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도는 농림수산물 총 수입액은 6.7억불, FTA 대상수입액 3.3억불, FTA 적용 수입액 1.5억불로 FTA 수입 활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2012년 인도 수입품목 가운데, FTA 대상 품목의 수입액 상위 10대 품목은 박류, 참깨, 잎담배, 식물성액즙, 기타 식물성 유지, 어육, 대두, 쌀 등이다. 이 가운데 박류와 어육, 대두를 제외한 품목은 FTA 특혜 수입실적이 저조하다.

| 표 4-5 | 농림수산물 협정별 FTA 특혜수입 현황(2012)

단위 : 백만달러

협정	총 수입액	FTA 대상 수입액	FTA 적용 수입액
미국	7,878	5,085	3,821
ASEAN	5,470	2,882	2,137
EU	2,649	1,972	1,578
인도	674	330	156
칠레	563	522	510
EFTA	190	145	125
페루	132	124	118
싱가포르	96	87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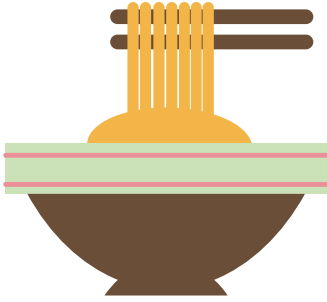
| 표 4-6 | 농림수산물 협정별 FTA 특혜수입의 주요품목(2012)

협정	주요품목	특징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쇠고기, 밀, 돼지고기, 사료</li> <li>오렌지, 아몬드, 치즈, 호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림수산물 수입 1위 국가로 수입규모가 압도적임</li> <li>FTA 활용비중 높게 나타남</li> <li>로얄제리와 오렌지<sup>41)</sup>의 경우 FTA 특혜수입 규모는 큰 편이나, 상대적으로 FTA 활용비중은 저조</li> </ul>
AS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식물성유지, 박류, 문어</li> <li>어육, 당밀, 기타목재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활용은 평균수준</li> <li>상위 10대 품목의 평균 FTA활용비중이 매우 높음</li> <li>새우<sup>42)</sup>, 기타어류, 천연고무 활용비중 낮음</li> </ul>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돼지고기, 위스키, 포도주</li> <li>기타농산물, 사료, 초콜렛, 치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품목의 FTA 활용비중이 높음</li> </ul>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류, 참깨, 잎담배</li> <li>식물성액즙, 기타 식물성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 FTA국보다 FTA 혜택품목 비중 낮음</li> <li>FTA 활용비중 가장 낮음</li> </ul>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도, 돼지고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위 농림수산물 대부분 FTA 특혜가 적용됨</li> <li>FTA 활용비중도 매우 높음</li> </ul>
E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어류, 커피, 어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상위 품목 FTA 활용비중 높음</li> <li>치즈<sup>43)</sup>와 제조담배 활용비중 10% 미만</li> </ul>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커피, 오징어, 포도</li> <li>어육, 바나나, 수산부산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입규모는 적은편임</li> <li>FTA 활용가능 품목 및 FTA 활용비중 높음</li> </ul>

41) 로얄제리는 복잡한 원산지 결정기준, 오렌지는 계절관세 적용이 FTA 활용비중 저조의 원인으로 보임  
 42) 쿼터제한으로 활용비중 저조  
 43) 치즈는 엄격한 양허 수준이 FTA 활용 저조 원인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 농림수산물

3) FTA 수출유망 품목, 라면



우리나라에서 라면시장은 지난 1998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라

면 수출실적도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 인기상품 외에 '신라면블랙' '나가사끼짬뽕' '꼬꼬면' '기스면' 같은 퓨전제품들이 한류 열풍을 타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라면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 국가(수출규모 67백만불)에서 관세를 철폐하고 있어 FTA를 활용한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이기도 하다.

면류는 HS 10단위를 기준으로 10개 품목으로 분류되는데, 면류 중에는 라면(HS 1902.30-1010)의 수출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라면은 면과 스프로 구성된 간편한 즉석식품이다. 특히 장기간 보관 및 유통이 용이하고, 먹기가 편리하다는 점에서 수출 품목으로서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국으로의 라면 수출과 FTA 활용비중은 다음의 [표 4-7]과 같다. 라면의 총 수출 규모는 아세안, 미국, EU 순으로 근거리 식문화권인 아세안과, 우리나라의 교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미국·EU가 주요 수출 지역이다.

그러면, 라면의 수출과 FTA는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표 4-7]을 통해 살펴보자. 표에서 나타나듯이,

[ 표 4-7 | 라면의 협정별 특혜수출 현황(2012)

단위 : 백만달러, %

협정	총수출	FTA 대상수출	FTA 적용수출	FTA 활용비중
미국	24	24	12	52
아세안 <sup>44)</sup>	25	21	-	1
EU	13	13	12	93
EFTA	3	3	3	99
칠레	1	1	-	41
인도	-	-	-	0
페루	-	-	-	-

44) 총수출 실적과 FTA 대상수출실적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한·아세안 FTA는 아세안 내 국가별로 개방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임, 즉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라면이 FTA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

모든 라면의 수출이 FTA의 특혜를 활용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 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여 수출한 국가는 미국, EU, EFTA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FTA 활용비중은 EFTA > EU > 미국 순으로 최대 수출국인 미국도 50%미만으로 높지 않다.

이와 같이 국가별로 FTA 활용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데에는 원산지 결정기준<sup>45)</sup>의 엄격성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라면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의 역내생산을 요구하는 원재료완전생산기준부터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다양하다.

FTA 체결 국가별로 살펴보면, FTA 활용 비중이 낮은 칠레·인도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조합기준<sup>46)</sup>으로

상대적으로 엄격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FTA 활용이 높은 국가군인 EU·EFTA·미국의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이 단일 기준으로 다소 완화된 것이 확인된다. 결국 동일한 라면을 대상으로 FTA 국가 간 특혜 수출의 활용비중의 높고 낮은 원인은 원산지결정기준의 엄격성도 그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라면의 FTA 활용비중이 높은 EU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살펴보자. 우선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라면의 생산공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먼저, 라면은 밀가루와 물을 혼합하는 원료배합단계 → 라면의 면을 생성하는 성형단계 → 라면을 기름에 튀기는 유탕과정 → 포장과정 등을 거쳐 완성된다.

| 표 4-8 | 라면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과 FTA 활용비중 비교

협정 및 원산지결정기준	FTA 활용비중	협정 및 원산지결정기준	FTA 활용비중
칠레 (CTH+ RVC 45% / 30 %)	칠레 (41%)	EFTA (원재료 완전생산기준 <sup>47)</sup> )	EFTA (99%)
아세안 (CTH or RVC 40 %)	아세안 (1%)	EU (CTH)	EU (93%)
인도 (CTH +RVC 40 %)	인도 (0%)	미국 (CC)	미국 (52%)

45) FTA 용어집 2번 참조  
46) FTA 용어집 3번 참조  
47) FTA 용어집 4번 참조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 농림수산물

한·EU FTA 협정에서 라면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제조공정에서 원재료의 세번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원재료가 다른 국가에서 수입된 물품이라도 라면은 한국산 제품으로 특혜 수출이 가능하다.

즉, 라면은 주원료인 밀가루(HS 1101.00-1000호)가 국외산이어도 원료 배합 이후 식물유를 사용하여 기름에 튀기는 유탕공정을 거치면서 라면(HS 1902.30-1010호)으로 세번변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산제품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조합기준을 채택하는 칠레나 인도는 세번변경 이외에도 일정수준

이상 부가가치를 한국에서 창출한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산지결정기준으로서 단일기준을 사용하는 EU는 상대적으로 조합기준을 사용하는 칠레나 인도보다 달성하기 용이한 것이다.

한편, 칠레나 인도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타국가에 비해 엄격한 편이긴 하지만, 향후 FTA를 통해 라면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해당 국가의 원산지 기준을 잘 활용한다면, 더 큰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 표 4-9 | 라면 제조과정



### III. 시사점 및 활용방안

#### 1) 농림수산물의 FTA 수출 활용비중

농림수산물 수출시 FTA가 적극 활용되는 국가는 미국, EU, 칠레, 인도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는 총수출 대비 FTA 점유율이 평균 90%이상이며, 공통적으로 농림수산물 관세철폐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다.













농림수산물의 FTA 활용비중이 낮은 국가는 ASEAN, 페루가 해당되었다. 동 그룹은 공통적으로 총수출 대비 FTA 대상 수출 비중이 50% 이하이며, 장기 관세 철폐 및 양허제외 등의 이유로 FTA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별 농림수산물 FTA 수출 활용비중은 EFTA(90%), 미국 및 EU(47%), 페루(31%), 칠레(22%), 아세안·인도·싱가포르 5%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국의 주요 수출 농림수산물품목은 참치, 면류, 커피제품, 로얄젤리, 제조담배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 2) 농림수산물의 FTA 수입 활용비중

2012년 농림수산물 주요 수입국은 미국, ASEAN, EU로 나타났다. 또한, 농림수산물 수입에 대한 협정별 관세양허 수준이 다르며, 對미국 총수입의 65%, 對EU 총수입의 74%, 對아세안 총수입의 53%가 FTA 특혜가 가능한 품목이다.

| 표 4-10 | 협정별 농림수산물 특혜수출 FTA 활용 요약

구분	협정별 품목			
수출규모 1위 품목	칠레·미국·EFTA(면류) 	싱가포르(제조담배) 	ASEAN·EU(참치) 	
	인도(종자류) 	페루(로얄젤리) 		
	칠레(빵) 	EFTA(면류) 	ASEAN(제조담배) 	
FTA 활용 비중이 높은 품목	인도(기타수산물가공품) 	EU(어육) 	미국(로얄젤리) 	페루(곡류가공품) 

04. 산업별 FTA 이행 현황과 전망 : 농림수산물

2012년 수입 농림수산물에 대한 평균 FTA 활용 수준은 76%이며, 칠레, 페루, 싱가포르는 90%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국(75%), EU(80%), ASEAN(74%), EFTA(86%)가 50%이상이며, 인도는 44%로 다소 낮은 편이다.

FTA 국가별 주요 수입 농림수산물품목은 차별화된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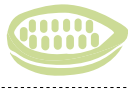









FTA 협정별로 주요 수입 농림수산물품목은 차별화된 특징을 보이며, 협정별로 수입규모 1위 품목과 FTA 활용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각

국가의 수입규모 1위 품목은 칠레의 포도, 미국의 쇠고기, EU의 돼지고기 등이다.

다음으로 FTA 활용비중이 높은 품목은 미국은 밀, 사료, 아몬드 등이며, EU는 돼지고기, 포도주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칠레의 경우 FTA 특혜수입 상위 10대 품목의 평균 활용비중이 95%이상으로 타국가의 품목에 비해 활용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각 FTA별 특혜 수출입에서 나타나는 차별성은 앞으로 우리 기업이 FTA를 활용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 표 4-11 | 협정별 농림수산물 특혜수입 FTA 활용 요약

구분	협정별 품목			
수입규모 1위 품목	칠레 (포도)	싱가포르 (코코아 조제품)	EFTA (기타어류)	ASEAN (기타식물성 유지)
				
	인도 (박류)	EU (돼지고기)	미국 (쇠고기)	페루 (기타수산물가공품)
				
FTA 활용 비중이 높은 품목	칠레(상위 10위 품목)	싱가포르 (코코아 조제품, 기타유지가공품, 밀가루)	EFTA (기타어류, 커피, 식물성액즙)	ASEAN (박류, 문어, 당밀)
	특혜수입상위 10개 품목의 평균 활용비중 높은 수준			
	인도 (박류, 어육)	EU (돼지고기, 포도주, 제재품)	미국 (밀, 사료, 아몬드)	페루 (커피, 포도,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